

의안번호	제 172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3년 1월 4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72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3년 1월 4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「지방세법」 개정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부동산 등 취득세 관련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 관련 「지방세법」 인용조항 수정(안 제6조)
(현행) 법 제10조제4항 → (개정) 법 제10조의6제4항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붙임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10조제4항”을 “법 제10조의6제4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과점주주의 신고) <u>법 제10조 제4항</u>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	<p>제6조(과점주주의 신고) <u>법 제10조의6제4항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

관련법령

□ 지방세법

[시행 2022. 1. 1.] [법률 제18655호, 2021. 12. 28., 일부개정]

제7조(납세의무자 등)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「지방세기본법」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(이하 “과점주주”라 한다)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(법인이 「신탁법」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登記·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)을 취득(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)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44조를 준용한다.

제10조의6(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) ④ 제7조제5항 전단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의 취득당시가액은 해당 법인의 결산서와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당시가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.

1. 제10조,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, (중략) 및 제15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: 2023년 1월 1일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4항제1호

○ 사 유

-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「지방세법」 상의 근거조항을 법 개정에 맞게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서, 별도의 비용 발생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사유에 해당함.

○ 작성자

기획관리실 세정담당관 이정노